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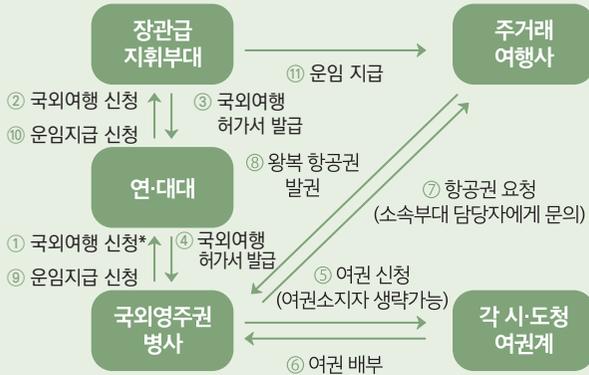
국외여행 보장 및 휴가여비 지급

- 현역병의 경우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이 가능하며, 거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와 국내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지급(전역 시 편도 항공료와 국내 여비 지급)
-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국외영주권자(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포함)의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국 방문 시 영주권 유효기간과 제3국 체류 가능 기간을 고려하여 국외 왕복항공료 지원 가능

(참고) 현역병 휴가(전역)시 여비 지급

- 현역병의 정기휴가 여비는 복무 중 최대 3회(왕복)까지 지급할 수 있고, 전역 시 귀가를 위한 여비는 1회(편도) 지급
- 국방부(국군재정관리단)에서 항공사에 항공권 대금을 지급하고 난 뒤 개인사정으로 여행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그 수수료는 병사 개인이 부담

국외여행 절차



* 첨부서류 : 국외여행허가서, 국외여행계획서
 ※ 부대 사정에 따라 휴가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속부대담당자에게 문의

문의처

구분	부서명	전화/팩스	주소
병 무 청	국외자원관리과	042-481-2755 (35208)	대전 서구 청사로 189
		042-481-2979	정부청사 2동 805호
서울지방병 무 청	병역자원과	02-820-4335 (07360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
		02-820-4154	
부산울산지방병 무 청	고객지원과	051-667-5324 (48208)	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01
		051-667-5124	
대구경북지방병 무 청	고객지원과	053-607-6471 (41069)	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3
		053-607-6270	
경인지방병 무 청	병역판정검사과	031-240-7234 (16440)	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
		031-240-7505	
광주전남지방병 무 청	현역입영과	062-230-4241 (61489)	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8
		062-230-4360	
대전충남지방병 무 청	병역판정검사과	042-250-4236 (34944)	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6번길 5
		042-250-4133	
강원지방병 무 청	병역판정입영과	033-240-6234 (24342)	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
		033-240-6239	
충북지방병 무 청	병역판정입영과	043-270-1236 (28653)	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33
		043-270-1300	
전북지방병 무 청	병역판정입영과	063-281-3293 (55033)	전북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
		063-281-3290	
경남지방병 무 청	병역판정검사과	055-279-9231 (51439)	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
		055-279-9383	
제주지방병 무 청	병역관리과	064-720-3241 (63219)	제주도 제주시 청사로 59 합동청사3층
		064-720-3249	
인천 병 무 지 청	고객지원과	032-740-2500 (22205)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
		032-454-2423	
경기 북부 병 무 지 청	병역판정검사과	031-870-0232 (11642)	경기도 의정부시 전차로 76
		031-870-0351	
강원 영 동 병 무 지 청	병역관리과	033-649-4243 (25590)	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705
		033-649-4290	



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





제도 안내

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제도란?

외국의 영주권 등을 취득한 국외이주자가
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
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
모국에서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제도로서
 입영희망자에게는 입영시기 선택 및
 병역이행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
 거주국 방문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.

신청대상자 (국외이주자)

-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
 - 외국의 영주권(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)을 얻은 사람
 -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(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)을 얻은 사람
- '국외이주' 사유로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(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)
- 「재외국민등록법」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
 - 본인이 복수국적인 사람
 -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
 - 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
- 본인이 복수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



신청

접수 및 제출 서류

- **접수** : 병무청 누리집 온라인 접수 또는 지방병무청이나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방문 접수

※ 병무청 누리집 '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' 신청 방법

병무청 누리집 > 민원신청 > 국외여행/체재 >
 영주권자 입영 희망 민원 신청 > 본인인증 >
 입영일자 및 병역판정검사일자 선택

- ※ 사회복지요원 소집 대상자는 출퇴근 복무할 거주지역에 복무기관 소요가 있어야 하므로 소집입영 가능 일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● 제출 서류 :

-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서
- 체류자격 증명서(영주권, 무기한/장기체류자격,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)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(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)

● 유의 사항

각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 기간 출국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으므로, 입영 전에 거주국의 이민 당국으로부터 사전 「재입국허가서(Re-entry Permit)」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⚠ 입영희망신청의 취소 방법

사정이 있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의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입영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「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」를 제출



병역 이행

병역 이행 과정

-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
 -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선택 가능
 - 입영 희망 시기는 신청서 제출일부 6개월 이내에 있는 입영일자 선택 가능
 - ※ 현역 모집병 지원 시 선발 가산점 부여 (어학병, 카투사 등 일부 제외)
- 육군훈련소에서는 현역병 입영 후 1주간 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(분기 1회)
- 부대분류는 무작위 전산 분류하며, 군사특기는 군 총원 소요 범위에 따라 결정(본인의 특기, 신체검사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므로 개인의 특정 요건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음)
-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
- 전역 시 「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」 수여

'24년도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일자

- 입영일자 : 3.18.(월) / 5.20.(월) / 8.19.(월) / 10.21.(월)
- 입영부대 : 육군훈련소(분기 1회)
 - ※ 군 적응 프로그램 운영이외의 날에도 원하는 시기에 입영 가능

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(국적법 제12조)

만 22세가 되기 전에 국적선택(외국국적불행사 서약에 의한 복수국적 유지 포함)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인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면제된 때부터 2년 내에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으며, 이행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국적상실 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법무부 관련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.

* 국적 관련 문의 : 법무부 국적과 (02-2110-4123~4)